##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018 발의연월일: 2022. 11. 1.

발 의 자:윤영덕·문정복·최강욱

설 훈·박찬대·김정호

송갑석 · 김경만 · 김병기

이동주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고시인 「은행업감독규정」에서는 현행법에 규정하고 있는 경영공시 의무 외에도 은행으로 하여금 주주가 알아야 할 내용을 주주총회에서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경영공시 의무는 법률에 근거한 의무인데 반하여, 주주총회 보고 의무는 법률에 근거하고 있지 않음.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은 행의 부실여신 현황과 일정 금액 이상의 채권조정 내역 등을 보고하 도록 하는 것의 취지는 바람직하나,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고시에 의하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범위를 일탈하는 규정으로 보임.

이에 은행으로 하여금 회계연도 중 변동된 부실여신 현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대출 및 지급보증 이용자에 대하여 해당 회계연도 중 신규 발생한 채권 재조정 현황, 자회사등의 영업성과와 재

무상태에 관한 경영평가결과 등을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4 및 제69조제2항제1호·제2호 신 설 등).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에 제4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4(정기주주총회 보고) 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주 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해당 회계연도 중 변동된 부실여신 현황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대출 및 지급보증 이용자에 대하여 해당 회계연도 중 신규 발생한 채권 재조정 현황
- 3. 자회사등의 영업성과와 재무상태에 관한 경영평가 결과
- 4. 제34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사항
- 5. 그 밖에 은행의 경영건전성에 영향을 미치고 주주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 각 호의 보고사항에 관한 세부기준,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제69조제2항 중 "제34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아니한 은행"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34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은행
- 2. 제43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주주총회에 보고를 하지 아니하 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고한 은행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선 설>       제43조의4(정기주주·         은행은 다음 각       정기주주총회에 보다.         1 채단 회계여도	
실여신 현황 2. 대통령령으로 이상의 대출 및 용자에 대하여 도 중 신규 발 조정 현황 3. 자회사등의 영역 상태에 관한 경 4. 제34조제4항에 원회로부터 경역 여 필요한 조치 사항 5. 그 밖에 은행의 에 영향을 미치 아야 할 필요가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 중 변동된 부 정하는 금액 지급보증 이 해당 회계연 생한 채권 재 업성과와 재무 영평가 결과 따라 금융위 영개선을 위하 기를 요구받은 의 경영건전성 기고 주주가 알 나 있는 사항으 등으로 정하는

제69조(과태료) ① (생 략)

② 제34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은행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신 설>

③ ~ ⑥ (생 략)

관한 세부기준,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제69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u> <u>해당하는 자</u>-----

- 1. 제34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은행
- 2. 제43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정기주주총회에 보고를 하지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고한 은행
- ③ ~ ⑥ (현행과 같음)